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2023. 3. .
여성가족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1년 9월 15일, 권인숙의원 등 11인

나. 회부일자: 2021년 9월 16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00회 국회(정기회)

제1차 여성가족위원회(2022.9.16.)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
토론, 소위원회부

제403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23.2.14.) 상정, 축조심사, 의결(대안반영
폐기)

제1차 여성가족위원회(2023.2.23.) 상정, 소위심사보고, 의결(대안
반영 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권인숙의원)

성범죄자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에의 취업하는 것을 제한하는

제도는 성범죄자와 아동·청소년 간의 접촉을 최소화하고 성범죄 피해를 예방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의 범위가 법 개정을 통해 확대되어 왔음.

그간의 법률 개정을 통해 새로이 설치·운영의 근거가 마련된 기관인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 등 아동·청소년과의 관련성이 높은 기관은 취업제한 기관으로 추가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관련 사안을 정비하고자 함.

한편, 범죄의 처벌형을 규정하는 조문의 체계적 완비성을 위하여 해당 징역형의 범위가 ‘무기’인지 ‘유기’인지에 관해 정확한 법적 표현을 사용하고, 제11조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범죄의 처벌형에서 벌금형이 삭제됨에 따라 관련 사안을 정비하고자 함. 또한 본법의 입법 목적이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처벌과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음을 고려하여, 제20조 공소시효에 관한 특례의 적용 범위 규정에 연령 개념을 적용하여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임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수석전문위원 송주아)

무기징역을 법정형으로 정할 때는 ‘무기’ 표현을 사용하여 무기징역과 유기징역을 구분하고 있으므로 ‘n년 이상의 징역’으로 규정하더라도 유기징역임을 유추할 수 있을 것이나 일반적으로 규정의 명확성

제고를 위하여 ‘유기’ 표현을 포함하는바, 개정안은 타당한 것으로 보임.

안 제20조제3항은 공소시효에 관한 특례 대상을 ‘13세 미만의 사람 및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특정 죄를 범한 경우에서 ‘13세 미만의 사람 및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특정 죄를 범한 경우로 변경하려는 것임.

본 법률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처벌 및 절차에 관한 특례 등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데 피해자를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이라고 규정할 경우 아동·청소년이 아닌 19세 이상의 사람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는바,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임을 명시하는 개정안은 타당한 것으로 보임.

안 제32조는 법인 대표자나 법인·개인의 대리인·사용인·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1조제3항·제5항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하는 것에서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제11조제3항·제5항은 본래 징역형과 벌금형이 선택형으로 규정되어 있었으나 벌금형을 삭제하고 징역형만 규정하는 것으로 개정되어 ‘해당 조문의 벌금형’이 존재하지 않게 되었으므로 개정안과 같이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으로 수정하는 것이 법체계상 타당할 것으로 보임.

안 제56조제1항은 취업제한기관에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 및 청소년복지시설(제6호), 성매매피해자등을 위한 지원시설(제9호), 성교육

전문기관 및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제9호의2)를 추가하려는 것임.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 청소년복지시설, 성매매피해자들을 위한 지원시설, 성교육 전문기관,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에서는 교육강사, 상담사 등 기관 종사자가 아동·청소년과 24시간 또는 장기간 빈번하게 접촉 및 교류를 하게 되는바, 취업제한기관으로 지정하려는 개정안은 타당해 보임.

현행법 제56조제7항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장이 성범죄 경력조회를 마친 취업 중인 자가 다른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에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에 다른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의 장은 성범죄 경력조회를 한 것으로 보아 해당 기관장의 행정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안 제56조제7항은 성범죄 경력조회 특례 대상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취업 중인 자’에서 ‘취업자등’으로 확대하려는 것으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및 다른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의 장이 성범죄 경력을 확인하여야 하는 대상은 ‘취업 중인 자’뿐만 아니라 ‘취업자등’ 전체에 해당하는바, ‘취업자등’에 대하여 성범죄 경력조회 특례를 적용하려는 개정안은 타당해 보임.

안 제56조제8항은 학교 등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에서 직무를 집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교육감·교육장이 고용하면서 성범죄 경력조회를 한 경우에 각 교육기관의 장은 그 자에 대한 성범죄 경력조회를 한 것으로 보려는 것임.

과거와 달리 학교 등 교육기관에서 전문 강사 등을 직접 채용하기보다는 교육청에서 일괄 모집하여 각 교육기관에 파견 등의 형태로 지원하는 경우가 많고 강사마다 여러 교육기관에서 수업을 함에 따라 성범죄 경력 조치가 중복된다는 지적이 있는바,

교육기관 지원 인력을 총괄하는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일괄적으로 성범죄 경력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각 교육기관의 장의 행정 부담을 완화하려는 개정안은 타당한 측면이 있음.

다만, 현행법 제56조제5항에서 취업자등이 성범죄 경력 조회 회신서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의 장에게 직접 제출한 경우가 아니라 기관장이 성범죄 경력 조치를 하려는 경우에는 취업자등 본인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는바, 개정안에서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취업자등에 대해 성범죄 경력을 조회하는 경우에도 취업자등 본인의 동의를 받도록 명시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

또한, 개정안에서는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성범죄 경력 조치를 대신할 수 있는 교육기관으로 초·중·고등학교와 대학 및 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위탁 교육기관(제1항제2호), 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학생상담지원시설 및 위탁 교육시설(제1항제2호의2), 그리고 아동·청소년 대상 교육기관(제1항제21호)을 규정하고 있는데,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통상 지원하는 다른 유형의 교육기관도 있음을 고려하여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성범죄 경력 조치를 대신할 수 있는 교육기관에 유치원(제1항제1호), 장애인등을 위한 특수교육지원센터 및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제공기관(제1항제19호)도 포함하여 수정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교육청마다 지원 인력을 관리하는 방식이 일률적이지 않다는 의견을 참고하여 ‘고용’이 아닌 ‘모집’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어 보임.

4. 대체토론의 요지

생 략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정경희)

동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조정 한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6. 찬반토론의 요지

없음

7. 심사결과

대안반영 폐기